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805호 2022. 11. 10.(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75호 시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1876호 시천시시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사천시 조례 제1877호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878호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879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사천시 조례 제1880호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881호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02호 시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2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제805호

사천시 조례 제1875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 관내"를 "사천시"로, "설치·운용에 관하여"를 "설치 및 운용에"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805호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제5조제1항 중 "시 관내에"를 "시에"로 한다.

제6조의1을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805호

사천시 조례 제1876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제805호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를 "관하여 다른 조례에"로, "없으면 이 조례로"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근무환경"을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805호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를 "관하여 다른 조례에"로, "없으면 이 조례로"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근무환경"을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805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사항

제805호

사천시 조례 제1877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긴급복지지원법」"을 "「긴급복지지원법」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을 "미약한 가구의"로 한다.

^1 천 시 공 보

제805호

네 603 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제8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05호

사천시 조례 제1878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1인가구" 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805호

-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 4. "사회적 가족도시" 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5. "공유주택"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제805호

-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 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 3.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 5. 문화 ·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 · 여가 생활 지원 사업
 - 6.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 7.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 8.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천시정 소식지,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제805호

사천시 조례 제1879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 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으로, "연 면적"을 "연면적"으로, "이상이여야"를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805호

-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부 칙

제805호

사천시 조례 제1880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 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 장치를 말한다.
-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

제805호

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방안
-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제805호

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자전거 주 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9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개인 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 비치

제805호

-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 운영
-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 8.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805호

사천시 조례 제1881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피해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남강댐 관

제805호

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정부의 남강댐 등의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
-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피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
- 4. 그 밖에 남강댐과 관련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2명 이상 3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상임대표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경상남도의회 의원(사천시 지역구 의원)
 - 2. 사천시의회 의원
 - 3. 언론계와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 4. 사천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제805호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

제805호

-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805호

사천시 규칙 제80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동식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5호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실기관련대회"를 "실기 관 련 대회"로,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